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54
----------	-----

2000. 5.
문교보사위원회

1. 심사경과
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4월 1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
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
 (2000년 4월 27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 (제안설명자 : 송영식 기획관리실장)

- 가. 제안이유
 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6216호 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6730호 2000.2.28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, 동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던 것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- 나. 주요골자
 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근거 규정 변경(안 제1조)
 ○ 종전 “정기회”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“정례회”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2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 (전문위원 윤병국)
 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2000.2.28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법(2000.1.28)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은 “공무원복무규

정 제9조”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”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 5. 토론요지 : 없음
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2000. 5.
문교보사위원회

1. 심사경과
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4월 1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
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
 (2000년 4월 27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 (제안설명자 : 송영식 기획관리실장)

- 가. 제안이유
 ○ 교육부의 시·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(2000. 3. 1)됨에 따라 감축된 서울시교육청 총 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- 나. 주요골자
 ○ 총정원을 91명 감축함.(총정원 : 7,369명 ⇒ 7,278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 (전문위원 윤병국)
 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2000.1.28 개정)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교육부의 시·도교